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신탁업자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문의가능 전화번호 : 02-2004-0251/0664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삼성KODEX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나. 집합투자기구 분류: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파생형)
- 다. 보관 · 관리기간: 2020.01.01 - 2020.12.31
- 라. 집합투자업자: 삼성자산운용(주)
- 마.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안타증권, SK증권, 삼성증권, DB금융투자, KB증권(구케이비),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골드만삭스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리딩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비엔케이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2.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변경일자	변경사유	주요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2020.04.01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제36조	6.(-) 다만,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투자할 수 있다.	6.(-)다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 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2020.05.13	투자한도 변경 제35조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1. 주식에의 투자는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제46조	2.(-)<신설>	2.(-) 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외의 사유로 (-)다한다.

* 자세한 변경사항은 <http://dart.fss.or.kr> 을 통해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해당사항 없음

_HSS FS SEL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 해당사항 없음

6. 회계감사인의 선임 · 해임에 관한 사항

변경전				변경일	변경후			
회계감사인명	계약기간	감사보수	계약방법		회계감사인명	계약기간	감사보수	계약방법
대주회계법인	1년	385만원	서면계약	-	-	-	-	-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7.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부합함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적정함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공정함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적정함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 집합투자신탁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
-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